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자살, 자해 등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 보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 보상됩니다.

- 정액보상담보: 사망담보, 후유장해담보 등
- 실손보상담보: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담보 등

Q) 보험기간 중 계약의 변경 가능여부?

A)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종류는?

A)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나 운전여부의 변경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가입연령: 19세~75세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②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원까지)

③ 보험기간: 3년

④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⑤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 해야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 장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계약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3% 이상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선택계약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500만원 한도로 보장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table>
<tr><td rowspan="11">선택
계약</td><td rowspan="2">사망후유
장해</td><td>사망보험
금</td><td></td><td colspan="2"></td></tr>
<tr><td>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td><td>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3% 이상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td><td colspan="2">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td></tr>
<tr><td colspan="2">교통상해
입원일당</td><td>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td><td colspan="2">(최초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td><td>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td><td colspan="2">(최초 중환자실 입원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 rowspan="3">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td><td rowspan="3">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td><td>사망</td><td>최고 3,000만</td></tr>
<tr><td>일반교통사고
중상해</td><td>최고 3,000만</td></tr>
<tr><td>중대한법규사고
42~69일 진단
70~139일 진단
140일 이상 진단</td><td>최고 1,000만
최고 2,000만
최고 3,000만</td></tr>
<tr><td colspan="2">운전중사고벌금</td><td>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td><td colspan="2">최고 2,000만원</td></tr>
<tr><td colspan="2">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td><td>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td><td colspan="2">보험가입금액 한도</td></tr>
<tr><td colspan="2">자동차
사고부상</td><td>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td><td colspan="2">최소: 가입금액의 1%
최대: 가입금액의 100%</td></tr>
<tr><td colspan="2">자동차사고
성형수술</td><td>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td><td colspan="2">보험가입금액</td></tr>
</table>

선택계약		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③ 피보험자의 질병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⑥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⑦ 이 상품의 「운전중사고벌금」,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다수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⑧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당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832
선택계약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	6,518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만	
	교통상해입원일당	2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3,000만	
	운전중사고벌금	2,000만	
	운전중변호사선임비용	500만	
	자동차사고부상	1,000만	
	자동차사고성형수술	500만	
보 험 료 합 계			7,350

※ 보험료산출기준 : 남자,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3년, 월납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